

【질문 4 : Invoice 제도의 도입 반대에 대하여】

<회답>

1.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 제도도입에 반대하는 이유

(1) 면세사업자가 거래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있는 점

Invoice 제도에서는,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부터 받은 적격청구서 또는 적격간이청구서(이하 「적격청구서 등」)의 보관이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이 되며, 또한 면세사업자는 적격청구서 등을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상거래로부터 배제되거나 혹은 배제까지는 가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소비세 상당액의 할인을 강요 당할 우려가 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저소득자가 많은 면세사업자는 세율인상에 따른 매입관련 소비세 상당액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도 감소하게 된다.

게다가, 고물영업자, 전당포 등이 소비자로부터 구입하는 자산관련 매입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에 비하여도, 면세사업자의 취급은 부당하다.

(2) 소비세의 본질에 위반되는 점

부가가치세라는 소비세의 본질적인 계산구조를 생각하면 과세되는 매입거래는, 세의 누적을 배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적격청구서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해 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못한 소비세 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소비세의 본질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

(3)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점

현재의 장부방식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소득산정에 부수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그렇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격청구서 등의 보관이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이 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의 기장의무에 더하여 새로이 모든 매입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여부와, 적정한 적격청구서인지의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애초 Invoice 제도는 복수세율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감대상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포함하지 않는 거래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새로이 업무부담을 세금의 징수만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장관행이 정착되어 현재의 장부방식에서 정확한 소비세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Invoice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4) 새로운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Invoice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탈세행위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나, 현재 여러 외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voice 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가 가공의 Invoice 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새로운 탈세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2016 년도 세제개정에서 적격청구서 등은 다른 사업자(면세사업자를 제외한다.)로부터 요구 받을 때에 한하여 교부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에게는 적격청구서 등의 교부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후에 세율검정은 할 수 없게 된다. 예로서 음식점이 점포 내 음식매출금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시에는 테이크아웃 판매(배달 또는 포장판매 등)로 위장 처리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이것도 검정할 수는 없다.

긴끼세리사회 「2018 년도 세제개정에 관한 의견서」 에서